

寡占株主에 대한 取得稅 課稅 解說

박 종 호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I. 立法趣旨

1. 課稅背景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11종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은 취득세의 과세객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1%이상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총자산중에서 위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11종을 과점비율만큼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상법상 과점주주는 1) 「1株 1議決權 原則」에 의하여 2)일반주주와는 달리 실질

-
- 1)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株마다 1個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적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그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주식 또는 지분비율내)내에서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즉, 과점주주는 그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자기소유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점에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95%의 과점주주가 당해법인소유의 별장이나 골프장이 있을 경우 법인명의 소유이지만 실제로는 그 과점주주가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해주식을 제3자가 100% 취득하였을 경우 실제로는 주식을 100% 취득한 자에게 자산 및 경영권이 넘어 갔으나 부동산등 자산은 당해 법인소유로 남게 되는 것을 보아도 과점주주에게는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 등은 경영권과 소유권의 분리가 그 설립원리인 만큼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널리 일반인에게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하여 공개기업과 같이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함이 세법의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비율이상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주식 비율내)내에서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점비율의 증가분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것임(세정 13407-877. 2000. 7. 8)

2. 稅法規定

<지 방 세 법>

-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法人(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상장한 法人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法人에게 賦課되거나 그 法人이 納付 또는 納入할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應當하여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の 課稅基準日 또는 納稅義務成立日(이에 관한 규정이

2) 權康雄, 「축조지방세법해설」, (주)조세통람사, 2000. 2. 381면

없는 稅目에 있어서는 納期開始日) 현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第2次納稅義務을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는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3·12·27 개정)(99.12.28 단서신설)

1. 無限責任社員

2. 과점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9.12.28 개정)

● 제105조(납세의무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取得稅가 非課稅 또는 減免되는 部分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연대납세의무)을 준용한다.

●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除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II. 寡占株主의 範圍

1. 寡占株主의 概念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51%이상인 경우 2Group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父가 20%, 母가 20%, 본인이 20%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각 개인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51%이상자가 없지만 3인은 친족관계이므로 그 3인을 1Group으로 보아 60%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2. 非上場法人

지방세법 제22조에서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상장법인에 한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증권거래소(Korea Stock Exchange)에 상장하지 아니하였거나³⁾ 증권거래법 제177조의2 규정에 의한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시장에 등록된 법인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법인이 되는 것이다.

「上場」에는 신규상장, 신주상장, 변경상장, 재상장등이 있으며, “신규상장”이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의 발행인이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

3) 증권거래법 제177조의2(협회등록) 한국증권업협회중개시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인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을 일반에 매각한 후 처음으로 주권을 상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주상장”이란 거래소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권의 발행인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주권을 발행하여 상장한 것을 의미하고, “변경상장”이란 당해 주권의 종목(상호), 종류(우선주, 보통주), 액면금액, 수량(자본감소, 병합 및 분할 등) 등을 변경한 경우 새로이 주권을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상장”이라 함은 발행주권이 상장폐지된 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상장기업요건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규모, 재무내용, 유통성, 건전성 및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증권거래소가 증권거래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동법 제115조)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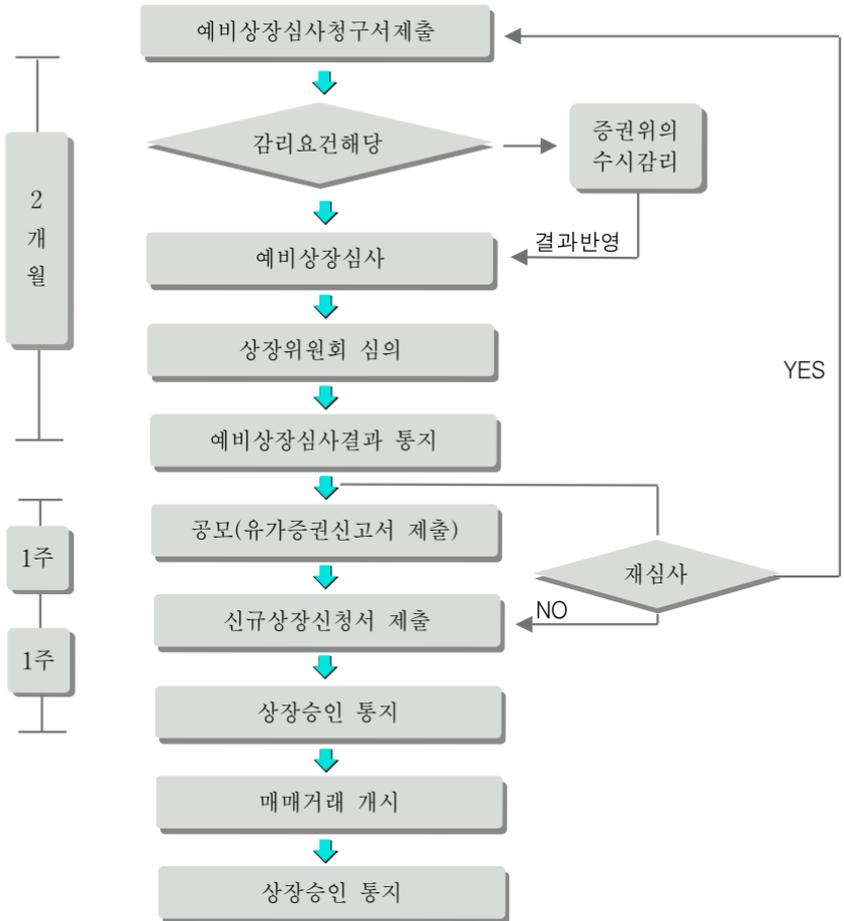
주권의 상장신청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하면 한국증권거래소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상장일을 결정 통지하는데 그 상장일 이전까지는 비상장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상장법인이 상장폐지절차중이거나 상장폐지유예중인 경우 그 폐지결정일 전까지는 상장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 참조)

따라서 상장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법인이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과점주주는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에 한하는 것임. <내무부 세정 22670-9247, 86. 8. 2>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1%이상을 동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착오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환부받으실 수 있으며, 환부이자 기산일은 납부 익일이 됨. <내무부 세정 22670-12463, 86. 10. 16>

<표 1> 유가증권 상장절차



지방세법 제22조와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 의하여 상장폐지가 되지 않은 한 비상장법인이 아니므로 상장폐지되기 전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 <세정 13407-85, 2000. 1. 21>

지방세법 제22조와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 의하여 상장폐지 유예중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상장폐지가 되지 않은 한 비상장법인이 아니므로 상장폐지 유예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세정 13430-948, '99. 7. 29>

3. 親族 其他 特殊關係人의 範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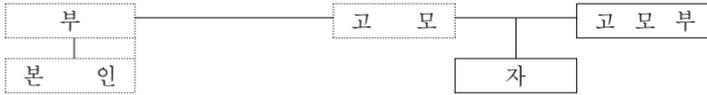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이 出嫁女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令 §6).

참고로 지방세법상 친족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2차납세의무) 및 동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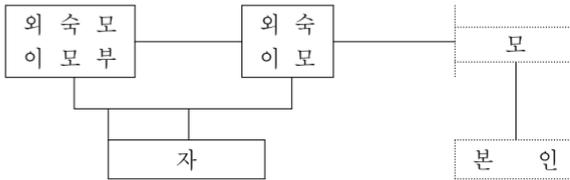
<표 2> 친족의 범위

1. 6촌이내의 父系血族과 4촌이내의 父系血族의 妻

2. 3촌이내의 父系血族女の 夫(男便) 및 子



3. 3촌이내의 母系血族 및 配偶者 및 子



4. 妻의 2촌이내의 母系血族 및 그 配偶者



5. 配偶者(사실상 혼인관계로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入養者의 生家の 直系尊屬

7. 他家에 入養한 子 및 그 配偶者와 養家의 直系卑屬



8. 婚姻外의 出生子の 生母

<친 족 관 계>

구 분	본안과의 관계	예 시
부 계	①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고모, 백부, 숙부, 백모, 숙모, 4촌형제, 6촌형제, 4촌형수, 4촌제수, 고모부, 고종사촌형제
모 계	③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외숙, 외숙모, 외사촌형제, 이모, 이모부, 이종사촌형제
처 가	④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처남, 처남댁, 처형, 동서 -
입·출양자 등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입양자의 친부모, 친조부모 출양자의 자녀등 -

여기서 친족관계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國稅基本法 基本通則 4-2-18...39(친족관계) >

- ① 영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소멸 여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의 규정에 의한다.
② 民法上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해서만 소멸하므로 出養을 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본인과 누나 딸의 남편(질녀의 배우자)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

<세정 13407-768, '99. 6. 28>

①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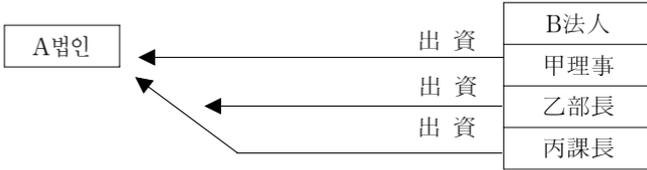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비공개법인 A에 대하여 B법인이 주식을 투자하고 또 B법인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B법인의 甲이사, 乙부장, 丙과장등)도 A법인에 대하여 주식을 투자하고 있을 때 A법인에 대하여 B법인과 B법인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 甲 · 乙 · 丙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A법인에 B법인은 투자하지 않고 B법인의 고용자인 甲 · 乙 · 丙만 투자할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 特殊關係가 성립하는 경우 >



비상장법인인 A법인에 • B법인도 출자를 하고 • B법인의 고용자인 甲 · 乙 · 丙도 출자를 하였으므로, B법인과 甲 · 乙 · 丙의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 特殊關係가 아닌 경우 >



비상장법인인 A법인에 • B법인의 고용자인 甲 · 乙 · 丙은 출자를 하였으나 • B법인은 출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B법인과 甲 · 乙 · 丙의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 株式의 發行會社와 使用인 其他 僱傭關係에 있는 경우 舊 地方稅法(90. 12. 31 改正되기 전) 제105조제6항 本文 所定の 寡占株主に 該當하는지 與否 (大判91누6399, 1992. 2. 11)>

구 지방세법(90.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소정의 친족관계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되려면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주식의 발행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使用인 기타 僱傭關係에 있는 者의 範圍 >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20조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基本通則 4-2-19...39>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9호에서 정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란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과 그 법인체에 근무하는 모든 임 · 직원이 되는 것임. <내무부 도세 22670-2869, 91. 7. 30>

— <법인의 대표이사과 임·직원과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 여부> —

법인의 대표이사과 임·직원과의 관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9호에서 정한 사용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음. <내무부 도세 22670-4554, 91.11.21>

— <使用인에 대한 特殊關係者の 範圍> —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말하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예컨대 A법인이 B법인에게 주식을 출자하고 있고 또한 A법인의 종업원도 B법인에게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를 말함. <내무부 세정 13407-67, 95.7.13>

— <使用人 기타 雇傭關係의 意味> —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9호 규정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법인도 출자를 하고, 출자한 법인의 종업원도 출자를 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과 종업원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임. <내무부 세정 13407-759, 97.7.10>

- ② 주주 또는 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通則 4-2-14...39 生計를 維持하는 者> —

영 제20조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通則 4-2-15...39 生計를 維持하는 者>

영 제20조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생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A法人>				<B法人>					
株 主	특 수 관 계	甲	30%	출 자	株 主	특 수 관 계	甲	40%	50% 이상
		乙(甲의 子)	10%				乙(甲의 子)	20%	
		丙(甲의 弟)	10%				丙(甲의 弟)	10%	
		B법인	10%						
	보 통 관 계	丁	20%			보 통 관 계	丁	20%	
戊	20%	戊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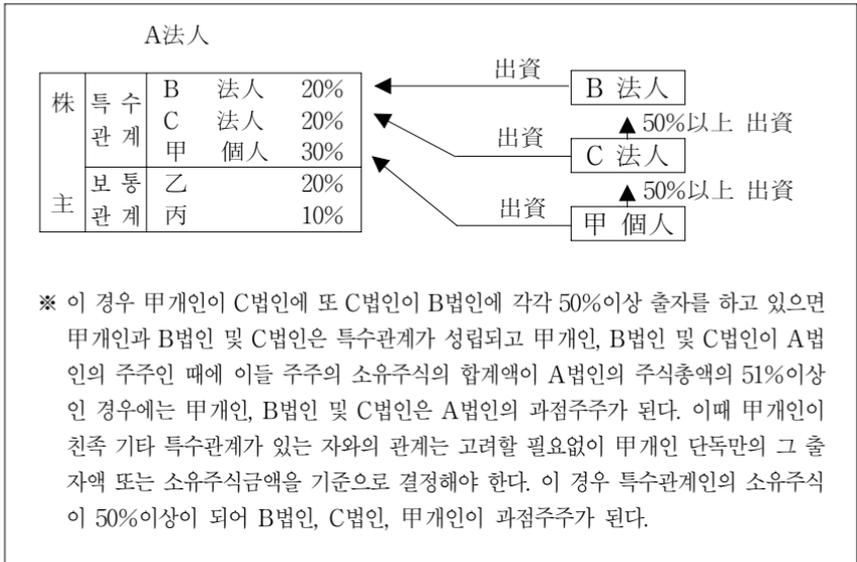
※ 이 경우 B법인의 주주인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乙·丙의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50%이상인 B법인이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乙·丙과 같이 A법인에 출자를 하면 B법인과 甲은 특수관계가 되어 B법인, 甲·乙·丙의 소유주식합계액이 A法人 주식총액의 51%이상인 경우에는 B법인, 甲·乙·丙은 A法人의 과점주주가 된다.

<사 례>

개인인 주주 또는 사원이 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의 출자액이 50%이상인 법인(귀문의 경우 65%)과 위 관계에 있는 자들이 타 법인에 출자를 하여 그 법인의 주식의 51%이상(귀문의 75%)인 경우, 최초 투자법인과 위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됨.

<내무부 세정 22670-5399, 86.5.6>

④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⑤ 주주 또는 사원 및 그와 ‘①’ 내지 ‘⑧’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理事의 과반수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A法人>

株 主	특 수 관 계	甲	20%
		乙(甲의 子)	10%
		丙(甲의 弟)	10%
		B법인	15%
	보 통 관 계	丁	25%
		戊	20%

<B法人(學校法人-非營利法人)>

(理事 過半數의 경우)

理 事 5 人	甲	20%
	乙(甲의 子)	15%
	丙(甲의 弟)	10%
	丁	30%
	戊	25%

출자

(株主 또는 社員이 設立者인 경우)

理 事 3 人	甲(設立者)	20%
	丁	40%
	戊	40%

※ 이 경우 A법인의 주주인 甲·乙·丙은 특수관계에 있으나 주식합계액이 51%미만 이므로 과점주주는 되지 않으나 甲·乙·丙의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인 B법인의 이사이며 또한 B법인의 5인 이사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와 甲·乙·丙 중 1인이 B법인의 설립자인 경우 B법인이 A법인에 출자하고 있을 때에는 甲·乙·丙 및 B법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그 주식의 합계액이 A법인의 주식 총액의 51%이상인 경우에는 甲·乙·丙과 B법인을 A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다.

Ⅲ. 寡占株主로서의 取得稅 納稅義務

1. 株式(持分)의 取得

가. 주식(지분)의 취득시 납세의무 성립

<지방세법 제105조⑥ 개정>

'97. 9. 30이전	'97. 10. 1이후	2000. 1. 1이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

○ '97. 9. 30 법개정 이전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사원으로부터 취득할 경우에 한해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즉, 주식의 승계 취득의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증자로 인한 취득, 실권주의 취득,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의 취득등은 납세의무가 없었다.

○ '97. 10. 1 법개정 이후에는,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즉, 증자로 인한 원시취득이든 다른 주주로부터 승계취득이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설립시의 과점비율분은 과세대상에 비율분에서 제외된다.

○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법개정 이전이든 이후이든 간에 반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든지, 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식소유비율 증가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행정자치부 세정 13407-자220, '98. 3. 6>

소각주식의 발행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의 주식이 증가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행정자치부 세정 13407-자82, '98. 3. 25>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세정 13407-4, 2000. 1. 5>

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당해 법인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소유비율 증가 또는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제110조제 4호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세정 13407-997, 2000. 8. 14>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세정 13407-1006, 2000. 8. 16>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지분비율이 증가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그 이후 증자로 인하여 주식은 취득하였으나,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세정 13407-1080, 2000. 9. 8>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세정 13407-1039, 2000. 8. 28>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의 과점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그 취득방법은 명의신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는 것임. <내무부 도세 22670-444, '91. 11. 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의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내무부 세정 13407-376, '97. 4. 24>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내무부 세정 13407-1091, '96. 9. 19>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세정 13407-704, 2000. 6. 5>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과점비용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태에 불구하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세정 13407-964, '99. 7. 30>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우선주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에 포함되어 “B”는 과점주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세정 13407-248, '99. 2. 25>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우선주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에 포함되는 “갑설”이 타당함.
 <세정 13407-26, '99. 1. 13>

나. 親族 其他 特殊關係人 內部移動

주주(사원) 1인과 친족 특수관계인을 1 Group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과점주주와 친족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수·양도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과점주주와 친족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주식이동 >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내무부 도세 22670-3594, '90. 10. 25>
 <내무부 세정 13407-563, '94. 8. 29>

“A”법인과 “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주식 양도·양수는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내무부 도세 22670-78, '89. 2. 22>

○ 과점주주인 김길동이 설립당시 주식지분 77%인 상태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규정의 친족인 외삼촌의 주식지분 2%를 취득하여 79%가 되었을 경우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주식이동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과점주주인 김길동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아닌 홍순동으로부터 지분 3%를 취득하여 80%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80%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내무부 세정 13407-170, '97. 4. 8>

귀문의 경우 귀하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 내부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내무부 세정 13407-697, '97. 6. 28>

법인설립시 주식비율이 98%인 과점주주가 자에게 1%를 증여하였을 경우에는 친족 특수관계 내부이동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내무부 세정 13407-371, '97. 4. 24>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주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간의 내부이동인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내무부 세정 13407-1571, '97. 12. 4>

귀문의 경우 대주주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간의 내부주식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내무부 세정 13407-1642, '97. 12. 16>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과점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그 주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간의 내부이동인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세정 13407-9, 2000. 1. 6>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친족·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친족·특수관계인간의 내부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세정 13407-900, 2000. 7. 12>

2. 株式 移動 類型別 課 税 區 分

가. 最 初 과점주주가 승계취득(승§78①)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비율분에 해당분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부분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97. 9. 30 이전

'94. 2. 10 설립	60%	과세불가
'95. 5. 10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	70%	70% 과세

② '97. 10. 1 이후

'97. 10. 5 설립	60%	과세불가
'97. 12. 10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	70%	10% 과세

나.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추가로 주식취득(승§78②)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지분)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될 당시의 주식 소유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94. 2. 10	설립	60%	과세불가
'95. 5. 10	취득	70%	70% 과세('97. 10. 1 이후라면 10% 과세)
'96. 2. 10	취득	80%	10% 과세(70% 대비 증가분 10% 과세)

다. 주식양도후 일반주주가 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승§78③)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의 양도, 당해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승계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직전 과점주주가 되었을 당시의 주식소유비율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하여 과세한다.

(1) 5년이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92. 2. 10	60%	과점주주	60%	과세
'93. 3. 10	40%	일반주주	5년이내 다시 과점주주	10% 과세(70-60%)
'94. 2. 10	70%	과점주주		

(2) 5년이 경과한 경우

'88. 2. 10	60%	과점주주	5년경과
'89. 3. 30	40%	일반주주	
'94. 8. 10	70%	과점주주	

< 주식이동상황 >

'96. 10. 2	설 립	45%
'97. 3. 5	증 자	65%
'98. 3. 10	무상감자	100%

< 회 신 >

귀문의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타인소유株式이 무상감자 되므로 인하여 귀하가 소유한 주식비율만 증가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내무부 세정 13407-1323, '96. 11. 18>

※ 연구: 만약 '97. 10. 1 이후 증자한 경우라면 65%의 납세의무가 있음.

< 주식이동상황 >

(본 인)	A : 28%		A : 44%
(A의 子)	B : 5%		B : 5%
	C : 28%	⇒	F : 41%
	D : 28%		
(B의 장인)	F : 0%		

- A를 기준 : $44\% + 5\% = 49\%$ …… 과점주주 아님
- B를 기준 : $44\% + 5\% + 41\% = 90\%$ …… 90% 납세의무

< 회 신 >

본인(A)과 사돈관계에 있는 (F)는 본인(A)과는 친족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본인(A)의 아들(B)과는 장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족(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내무부 세정 13407-1176, '97. 9. 19>

※ 연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에서 “그”가 누구냐는 것이 쟁점이 된다. 이는 “그”는 지배주주, 대주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따라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경우 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주식이동상황 >

'96. 10. 5	설 립	40%
'97. 3. 2	불균등감자	60%
'98. 1. 5	양 수	80%

< 회 신 >

귀문의 경우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 80%의 납세의무가 있음.

<내무부 세정 13407-1671, '97. 12. 26>

< 주식이동상황 >

'97. 3. 5	설 립	80%
'98. 3. 10	실명전환	85%

< 회 신 >

귀문의 경우 법인설립시 80%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5%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증가된 5%('97. 10. 1 이후에 한함)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행정자치부 세정 13407-231, '98. 3. 6>

< 주식이동상황 >

'97. 2. 1	설 립	80%
'98. 2. 16	양 수	100%

< 회 신 >

귀문의 경우 '97. 2. 1 설립시에 과점비율이 80%인 상태에서 '98. 2. 16 타인소유주식 20%를 취득하였다면 20%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행정자치부 세정 13407-자18, '98. 3. 17>

< 주식이동상황 >

일자별 주식변동상황	1992. 9. 1 설립시	1997. 10. 28 양수도	1997. 12. 10 증자후
특수관계자	99.985%	100%	100%

당사는 위와 같이 대주주 지분변동이 있었던바 1997. 10. 28 양수도 취득시 과세대상여부 및 과세표준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함.

< 해석상의 견해 >

<갑설> 1997년 10월 28일 양수도시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개정된 규정에 의거 지분증가분이 0.015%에 대해서만 취득세 과세대상임.

<을설> 설립당시에 과점주주였고 양수도 후에도 과점주주이긴 하나 설립시 과세된 바 없으므로 100%를 과세해야 하며, 개정규정('97. 10. 1 설립시 제외)은 '97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부터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귀문의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증가된 0.015%('97. 10. 1이후에 한함)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행정자치부 세정 13407-자1, '98. 3. 6>

< 주식이동상황 >

	설립	감자	증자
(지분율)	50%	100%	100%
(주식수)	50주	50주	100주
(총주식수)	100주	50주	100주

< 회 신 >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감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후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하는 경우 지분전체(100%)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세정 13407-아 896, '98. 11. 16>

[事 例] 4)

종 전(1997. 9. 30이전)	개 정(1997. 10. 1이후)
1. 법인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 • 설 립 시: 60% • 주식취득: 5% • 과세대상주식비율: 60%+5%=65% 2.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 설 립 시: 49% • 증 자 시: 10% +59% …… 전부 과세대상 • 주식취득: 10% +69% …… 10%만 과세대상	1. 법인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 • 설 립 시: 60% • 주식취득: 5% • 과세대상주식비율: 5% 2.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 설 립 시: 49% • 증 자 시: 10% +59% …… 전부 과세대상 • 주식취득: 10% +69%-59%=10%만 과세대상

[事 例] 5)

- '88. 3. 22 설립 66%
- '89. 12. 31 취득 76% …… 76% 납부
- '93. 12. 31 양도 64%
- '95. 5. 1 취득 72% …… 5년(90. 5. 1)이내 최고비율 76% 대비 증가분이 없으므로 납세의무 없음.
- 2000. 10. 5 취득 80% …… 5년(95. 10. 5)이내 최고비율 72% 대비 8%증가분 납부

4) 權康雄, 前掲書, 385면

5) 權康雄, " , 389면

< 주식이동상황 >

'96. 2. 10	설	립	80%
'96. 6. 20	증	자	90%
'97. 12. 5	증	자	95%
'99. 2. 5	증	자	85%

< 회 신 >

귀문의 경우 '96. 6. 20에는 구지방세법(97. 9. 30이전)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증자로 인한 실권주식을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원시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개정된 지방세법('97. 10. 1시행)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97. 12. 5에 5%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세정 13407-1172, 2000. 10. 6>

< 주식이동상황 >

'82. 3.	설	립	85.0%
'87. 3.	증	자	85.7%
'97. 4.	양	수	93.3%
'99. 8.	증	자	96.1%

< 회 신 >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 4월에 7.6%, '99. 8월에 2.8%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세정 13407-545, 2000. 4. 24>

3. 課稅對象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주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중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과점비를 해당분이 된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토

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11종을 말한다.

여기서 자산이라 함은 유동자산이든, 고정자산이든 불문한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회사가 건축한 미분양 아파트의 재고자산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리스자산이라 하더라도 시설대여회사의 과점주주에게는 과세대상이 된다.

<總資産中 11種이 課稅對象>

- ① 不動産(土地, 建築物)
- ② 차 량
- ③ 기계장비, ④ 立 木, ⑤ 항공기, ⑥ 선 박
- ⑦ 광업권, ⑧골프회원권, ⑨ 콘도미니엄회원권
- ⑩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⑪ 어업권

流動資産 또는 固定資産 不問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과점주주가 된 때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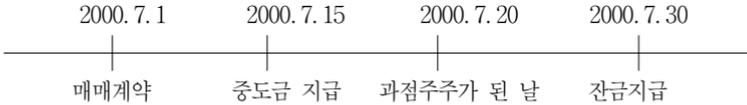
과점주주가 된 때라 함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시기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수중인 과세물건이 있거나 건축한 건축물이 외형상은 완공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 규정의 취득시기(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가 성립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취득의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위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어 전체 소유주식(100%)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 표준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용토지나 미분양주택등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내무부 세정 13407-752, '97. 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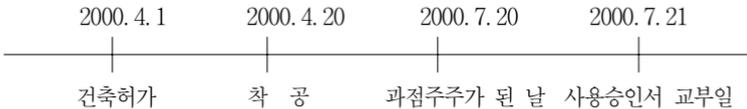
< 과점주주 성립시점 이후 취득으로 과세불가 >

<적용례 1>...유상승계 취득 중인 경우



※ 2000. 7. 20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시 취득중이므로 과세불가

<적용례 2>...건축물의 원시취득중인 경우



※ 2000. 7. 20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시 취득시기 미도래로 과세불가

< 취득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축중인 경우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내무부 세정 22670-14956, '86. 12. 11>

<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 주식취득 >

“C”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지방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되나, 특수관계가 성립되기전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내무부 세정 22670-10683, '86. 9. 3>

◀ 조성중인 골프장의 공사비 포함여부 ▶

1.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시행령 제86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에 대한 중과납세의무는 골프장 개장일(또는 등록일)이 되는 것이므로
2. 골프장의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고 골프장도 미완공된 상태에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동 골프장 건설공사비는 과점주주의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내무부 세정 13407-221, '96. 2. 24>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과점주주가 성립된 날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급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세정 13407-1038, 2000. 8. 28>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 규정은 시설대여회사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이용자에게 대여한 것이지만 그 이용자 명의로 등록됨으로 인하여 시설대여회사와 그 이용자 모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에게만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며, 세정 13407-246('99. 2. 25)호로 기히 회신한 바와 같이 금융리스자산이라 하더라도 시설대여회사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됨. <세정 13407-881, 2000. 7. 8>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 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중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 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예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비상장법인(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위·수탁계약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세정 13407-500, '99. 4. 27>

비상장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결정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그 후 동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가 종결된 시점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용되지는 않음. <내무부 세정 13407-1010, '97. 8. 27>

<타인건물에 부속된 특수부대설비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여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비상장법인 소유의 특수부대설비가 타인 소유의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경우에도 그 특수부대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내무부 세정 13407-441, '97. 5. 10>

명의 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내무부 세정 13407-1323, '96. 11. 18>

<회사정리절차 개시이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상장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함. (내무부 세정 13407-903, '96. 8. 3)

<大法院 判例>

會社 整理法에 의한 整理節次 開始決定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整理會社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整理會社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整理會社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整理節次開始후에 비로서 寡占株주가 된 자는 寡占株

主로서의 株主權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整理會社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舊 地方稅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 소정의 寡占株主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94. 5. 24 제1부 판결 92누 1113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4. 課稅標準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성립된 날 현재 또는 증가된 날 현재의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장부가액이 된다. 즉 당해법인의 과세물건 취득가액도 아니고, 시가표준액도 아닌 과점주주사유발생시점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재평가차액도 과세하지 못하고, 납세의무 시점에 정액법 또는 정율법 등으로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은 그 장부상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표 3>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과세표준>	<과세비율>	<세 율>	<세 액>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 과점비율	× 2%	= 세액

< 납세의무 성립시점의 장부가액 >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83. 12. 13, 83누 103>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총 가액중에서 감가상각 총당금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
 <내무부 세정 01254-8753, '87. 7. 20>

과점주주가 된 그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과세대상 물건 가액을 과점비율로 乘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과세대상 물건가액이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말하는 것임.
 <내무부 도세 22670-2084, '89. 6. 14>

< 물건별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점에 해당 >

지방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있어 소재지별로 간주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내무부 세정 13407-596, '97. 6. 9>

< 제세공과금이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

장부가액중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 제(주식취득)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2,13. 83누 103)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4.12.23. 다른 주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31.1%)을 추가로 취득할 당시 이미 제세공과금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원가로 「자산총액」속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제세공과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386, 2000. 5. 30>

※ 2000. 5. 30 이후부터는 취득세, 등록세등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 資産再評價差額の課稅標準에 포함 여부 >

당해 사업연도 중에 결정된 자산재평가액은 법인장부상 사업연도 개시일에 소급하여記入(認定)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산재평가법이라는 별도의 조세정책에 의한 것이므로 자산재평가가 확정되기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표는 그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법인장부에 사실상 기표된 가액으로 함. <내무부 세정 1268-5272, '82. 4. 20>

寡占株主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擬制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取得擬制 當時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法人의 決算書,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取得擬制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재평가액에 대한 효력의 발생시점은 정부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고 再評價日로 소급되지만 재평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 이후 재평가에 대한 정부결정이 있기까지의 寡占株主의 재산취득이 의제된 경우에도 그 取得擬制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이 마땅하고 資産再評價決定의 遡及效力에 따라 증액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대법원 제2부 83누 103, '83. 12. 13 선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제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제판결 확정일”에 당해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명의신탁 해제판결 확정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부동산등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규정한 총 가액이 되는 것임. <내무부 세정 13407-1182, '97. 9. 19>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의 승계취득자의 취득시기(잔금지급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 이전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승계취득자의 중도금 납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공동주택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

<세정 13407~463, '99. 4. 19>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그 부동산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에 대한 과점비율이 되는 것이며, 여기서 총가액이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또한 동법 제11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세정 13407~927, 2000. 7. 21>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장부상 가액(감가상각누계액 제외)이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은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과 리스이용자의 법인장부를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세정 13407~177, 2000. 2. 15>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이후부터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세정 13407~176, 2000. 2. 14>

< 질의사항 >

내무부 세정 01254-8753('87. 7. 20)호로 질의회신한 내용을 보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과점주주 성립일)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총 가액중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감가상각충당금을 반영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답 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감가상각충당액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으로 과점주주 성립일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감가상각충당금을 제할 수 없음으로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총액(60,262,600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을 설> 취득세 과세표준액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물건의 정당한 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과점주주 성립일이 '98. 12. 14일이고, 감가상각충당금은 '98. 12. 31일자로 하여, 과점주주 성립일에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혹하므로 당해연도('98. 12. 31.현재) 감가상각액을 제한 과세대상 물건총액(28,443,949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병 설> 취득세 과세표준액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물건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므로 과점주주 성립일('98. 12. 14)까지 당해연도의 감가상각 충당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한 과세대상물건 총액(29,925,914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 회 신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귀 도 및 귀 시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함.

<세정 13430~999, 2000. 8. 14>

< 법인장부상가액에 대한 질의 >

법인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때에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가액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하였는바, 법인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일(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참고 세정01254-8753 1987. 7. 20) 그러나 감가상각은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은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취득 후 전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법인부터 잔존가액을 제외한 전액을 상각한 경우까지 다양할 수밖에 없고 법정상각을 실시한 경우의 감가상각액도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상각누적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제외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갑 설> 실제 상각액과는 무관히 정률법에 의한 법정상각을 다한 경우의 금액으로 본다.

<을 설> 문자그대로 법인의 장부상 해당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의미한다.

< 회 신 >

귀문의 경우 “을설”(법인의 장부상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타당함.

<세정 13407~465, '99. 4. 19>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사업년도 기중에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당해법인의 회계처리 방식에 의한 장부상 가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함[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세정 13407~847, 2000. 7. 1>

5. 納稅義務者 및 納稅地

가. 납세의무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식발행법인인 소유물건을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발행법인이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납세고지(부과처분)를 하여야 한다.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취득하는 자이므로 개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다.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시 납세의무자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당해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가 되는 것임. <내무부 도세 13421-61, '93. 1. 27>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식발행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으로 의제하는 것이며 친족특수관계인이 있을 경우 각자 주식보유 비율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내무부 세정 13407~803, '97. 7. 16>

나. 納稅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납세지 역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발행법인소재지 시·도가 아니라 취득세 과세 물건 소재지 시·도가 된다. 예컨대 주식발행법인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하고 동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용인시에 골프장이 있고, 대구지점이 있으며, 제주도에 임야가 있다면, 동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지는 각 부동산소재지 시·도(시군구)가 되는 것이다. 차량·건설기계(기계장비) 등 동산도 동 과세물건소재지 시·도가 납세지가 됨은 물론이다.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당해 법인 소유 자산 중에서 취득세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 11종)을 과점비율만큼 취득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96. 4. 2.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면 '96. 4. 2. 현재 취득된 과세물건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지는 당해 물건 소재지 시도(시군구)가 됨.

<내무부 세정 13407~893, '97. 7. 31>

IV. 稅率適用 및 申告納付

1. 세율적용

과점주주는 그 주식발행법인소유 과세물건을 취득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세율 또한 일반적으로 2%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취득의제 대상물건 중에서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룸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중과세율(15%)이 적용된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과점주주가 개인일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그 주체가 법인에 한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중 중과세 대상이 있으면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됨.

<내무부 세정 1268-7519, '81. 5. 18>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비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아닌 2%의 일반세율이 적용됨이 타당함.

<내무부 세정 13407-670, '96. 6. 25>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있어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개인일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중과할 수 없음.

<내무부 세정 13407-131, '96. 2. 3>

<내무부 세정 13407-119, '96. 2. 1>

2. 申告納付

전술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물건 소재지 시·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法 §120①)

과점주주가 동기간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11조 제112조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법 §121①)

V. 非課稅 및 連帶納稅義務 等

1. 非課稅 · 減免

과점주주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법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합병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내무부 세정 13407-713, '94. 9. 28>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비과세됨.

<내무부 세정 1268- '80. 5. 27>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4호 및 제114조제3호 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 이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귀 문의 경우 90% 전체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내무부 세정 13407-221, '96. 2. 24)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업단지의 최초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내무부 세정 13407-691, '97. 6. 28>

— < 현물출자로 면제받은 이후 과점주주의 성립시 비과세 불가 —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의제 당시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법 제105조제6항 단서규정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당시(과점주주가 된 때)에 과점주주가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과점주주가 비과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취지로서 청구인들의 경우 1995. 12. 13.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 의제취득한 것으로 보는 취득세 과세물건이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들도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권 취득세등을 부과지한 처분을 적법하다 할 것이고 법인 설립당시 법인에게 비과세하였다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당연히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내무부 심사결정 내심 '97-99호, '97. 3. 26>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는 과점주주성립 시점에서 당해 주식 발행 법인의 총자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대도시에서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지방세가 면제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행정자치부 세정 13407-자469, '98. 6. 5>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소유자산 중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의 규정(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님.

<세정 13407~221, 2000. 2. 26>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 소유자산중 부동산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님.

<세정 13407~941, '99. 7. 28>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중소기업간의 통합이후 주식을 교부받아 과점주주의 과점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세정 13407~661, '99. 6. 3>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 소유자산 중 부동산·차량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당해 비상장법인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님(내무부 심사결정 제'97-99호, '97. 3. 26 참조).

<세정 13407~1002, '99. 8. 11>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 소유자산 중 부동산·차량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당해 비상장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님(내무부 심사결정 제'97-99호, '97. 3. 26 참조).

<세정 13407~197, '99. 2. 10>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 소유자산 중 부동산·차량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며(내무부 심사결정 제'97-99호, '97. 3. 26 참조) 귀문의 경우 과점주주 'A'와 법인 'B'는 각각의 과점비율(A는 60%, B는 40%)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세정 13407~300, '99. 12.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제6호에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게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세액 안분은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임.

<세정 13407~949, 2000. 7. 27>

귀문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양수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세정 13407~387, '99. 3.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에 의하면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해당 각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의 규정이 해당주식의 양수인에게 적용됨.

<세정 13407~743, '99. 6. 23>

중소기업 통합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세정 13407~1022, 2000. 8. 18>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2호 관련사항임.

2. 連帶納稅義務等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5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과점주주중 법 제22조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다음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② 명예회장, 회장·사장·부사장·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③ ① 및 ②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참고문헌

- 權康雄, 「逐條地方稅法解説」, 서울; 租稅通覽社, 2000.
 權康雄, 「地方稅 講論」, 서울; 租稅通覽社, 2000.
 金大榮·車康錫, 「地方稅事例總覽」, 서울; 稅經社, 2000.
 金疇洙, 「親族·相續法」, 서울; 法文社, 1994.
 李鍾奎·金在雄·趙南馥, 「法人稅法解説」, 서울; 大韓商工會議所, 1996.
 崔基元, 「商法學新論」, 서울; 博英社, 1996.

